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내구연한 연장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49
----------	------

2013년 7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6월 11일, 이종필 의원(찬성자 12명)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 7월 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필 의원)

가. 제안 이유

서울시는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사용 하여 왔으나, 최근 개선된 차량 성능과 비교하여 차량의 교체주기는 매우 짧아 예산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와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차량의 내구연한을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나.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의 공용차량 내구연한을 최단 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20만 km 로 연장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차량정비 강화를 강력히 촉구함.

3. 이송처

안전행정부, 서울특별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 제1호,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서울시가 관리·운영 중인 공용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단운행기간(7년, 일부 특수차량은 8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하여야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 대통령령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7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참고자료 참조).

▶ 서울시(공용차량 관리규칙)

차 종	'11.6.1이전	'11.6.2~'12.2.15	'12.2.16 이후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개정)
승용(전용·의전용)	내용연수 5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6년 또는 12만km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7년) 그리고 12만km
승용(경차·순찰차)			
승용(중형·소형)	내용연수 6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9년 또는 12만km	8년
승합(36인승 미만)			
승합(36인승 이상)	내용연수 8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9년 또는 12만km	8년
화물차량	내용연수 6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6년 또는 12만km	7년 그리고 12만km
특수차량			7년

▶ 중앙정부 :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차 종	2011.8.2 이전	2011.8.3~
승용(전용)	내용연수 5년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7년) 그리고 총주행거리 12만km
승용(중형·소형)	내용연수 6년	
승용(고속도로 순찰차)	내용연수 5년	
승용(교통 순찰차)	내용연수 4년	
승용(범죄 수사차)	내용연수 3년	
승합(36인승 미만)	내용연수 6년	
승합(36인승 이상)	내용연수 8년	8년
화물차량	내용연수 6년	7년 그리고 12만km
특수차량	내용연수 6년	7년

-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은 관리규정의 최단주행거리(별표)와 조달청장이 정한 최단운행연한을 원용하여 서울시 공용차량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 이종필 의원의 12명이 발의한 본 건의안은 서울시 공용차량의 최단주행거리를 현행 12만km에서 20만km로 하고, 최단운행연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임.
- 집행부가 관리·운영하는 공용차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공용차량 현황

연평균 주행거리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만km 미만	258(75.9%)	88(62.0%)	266(75.8%)
1만km ~ 17,500km 미만	52(15.3%)	45(31.7%)	66(18.8%)
17,500km ~ 3만km 미만	20(5.9%)	9(6.3%)	19(5.4%)
3만km 이상	10(2.9%)	0	0
평균 주행거리	9,108km	9,475km	8,156km
보유대수(평균 연식)	340대(5.4년)	142대(6.3년)	351대(6.6년)

- 관리규칙에 따를 경우 승용차는 신규차량 교체 요건인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 1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건의안의 최단주행거리(20만km)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 22년이 경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리규칙 예외조항(최단운행연한 3분의2(4.6년),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2(8만km))을 적용하면 교체주기는 8.8년이 되며, 건의안에 따르면 14.6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차량 교체 가능 도달연수

교체기준 도달연수	현행(7년 AND 12만km)	발의안(10년 AND 20만km)
승용차	13.2년	22년
승합차	12.7년	21.1년
화물차	14.7년	24.5년

- ※ 집행부는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단체 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개선된 교체기준에 대한 재설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추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임.
-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국산차량의 성능 향상으로 인해 내구성과 주행거리가 상당히 개선되었으므로 서울시 공용차량의 내구연한과 주행거리를 보다 연장하되,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2013년 산업기상도 조사'에 따르면 10년이상 된 노후차량이 전체 33%를 차지할 만큼 소비자들의 차량 보유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국내 생산 차량의 내구성과 안전도 향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차량의 성능보다는 연식과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차량 교체시기를 정하는 방식의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그러한 의미에서 본 건의안은 예산과 자원의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서울시 공용차량 운행실태를 보면 지방도시와 달리 운행 거리가 짧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보다 합리적인 차량 보유기간 선정을 위해서는 지나친 보유기간의 연장이 가져올 수 있는 차량의 수리비 증대와 차량 단종(斷種)에 따른 부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 차량 이용자의 만족도 저하와 고장(故障)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 등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집행부는 운전습관이 다양한 불특정직원들의 사용으로 개인차량에 비해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됨으로 안전에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며, 노후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아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약 1백만 원 이상의 연료비가 추가 소요된다는 측면을 감안해야 하는 입장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내구연한 연장 촉구 결의안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에서 운행 중인 공용차량의 내구연한 기준은 예산의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1976년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해 신규 등록일로부터 5년간으로 명시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1974년 ‘포니’ 승용차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개선된 차량의 성능을 무시한 채 35년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산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해왔던 것이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공용차량 교체 주기를 개선하고자 2011년 7월 26일에 최단운행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12만km를 초과하여야만 공용차량 교체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서울시도 2012년 2월 17일부터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성능 및 기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내구성과 주행거리도 상당히 향상되었고, 운수업에 이용되는 있는 승용차량의 경우 운행연수 7년에 추가연장을 신청하면 2년이 추가되어 총 9년을 운행할 수 있으며, 주행거리도 50만km까지 운행하고 있음을 볼 때 공용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나치게 짧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형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7년 정도 운행된 차량의 주행성능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주로 시내를 운행하는 서울시 공용차량의 특성상 주행거리도 많지 않아 현재와 같은 기준을 계속 적용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됨은 물론 소중한 자원의 낭비도 지속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예산절감을 통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용차량의 내구연한」을 10년, 20만km로 연장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차량 정비 강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